

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

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 본 프로그램은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টে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브랜딩을 위한 프로그램이오니,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.

2026년 8월 3일
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

I 모집 개요

□ 운영 목적

입주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및 전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제품·서비스의 브랜드 보호와 시장 진입 안정성을 높이고, 초기 창업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

□ 모집 대상

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টে을 보유하고 지식재산권 출원을 원하는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

※ 타 기관 사업화 자금 사업 중복수혜 불가, 신청 제외 대상은 【별첨1】 참고

□ 주요 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지원 규모

○ 총 4개사 내외

○ 기업당 프로그램 1개 선택 참여(①, ②, ③ 중 택1)

- ① 상표 출원 1건 및 멘토링 2회
- ② 상표 출원 2건
- ③ 특허 출원 1건 및 멘토링 2회

□ 지원 내용

○ 프로그램 ① : 상표 출원 1건 및 멘토링 2회

- 변리사 상담을 통한 상표 출원 전략 자문
- 온/오프라인 멘토링 총 2회 제공
- 상표 출원 1건 대행료 지원

○ 프로그램 ② : 상표 출원 2건

- 변리사 대행을 통한 상표 출원 2건 대행료 지원

○ 프로그램 ③ : 특허 출원 1건 및 멘토링 2회

- 변리사 상담을 통한 특허 출원 전략 자문
- 온/오프라인 멘토링 총 2회 제공
- 특허 출원 1건 대행료 지원

※ 특허 출원 비용은 기업에서 선납 후 공급가액의 80% 이내, 최대 금액 100만 원까지 지원

□ 운영 방법

-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는 협약된 전문 변리사를 통해 진행
- 기업은 센터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특허 및 상표 출원 관련 제출
- 멘토링은 멘토와 일정 협의 후 온라인으로 진행
- 출원 진행 상황은 센터 및 변리사가 공동으로 모니터링

□ 선정자 필수 의무

- 선정 후 7일 이내에 (특허)출원 대상 기술 관련 자료, (상표)상표 이미지(시안), 지정 상품 제안 목록 제출
- 멘토링 프로그램(해당 시) 적극 참여 및 회차별 보고서 제출

- 출원 진행을 위한 변리사 요청 자료 기한 내 제출

III 신청 방법

□ 신청 기간 : **2026. 8. 3.(월) ~ 2026. 8. 17(월) 24:00까지** ※ 접수 기한 엄수

□ 신청 방법 : **이메일 접수(sanhak@office.uhs.ac.kr)** ※ 방문 접수 불가

□ 제출 서류

- 제출 서류는 압축(Zip)파일로 첨부
- 파일명 :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신청서_기업명

필수 제출 서류
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붙임1~2) ②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(붙임3) ③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동의(붙임4) * 붙임1, 3, 4 날인 필수

□ 신청 시 유의 사항

- 신청서 내용에 허위 기재 사실 발견 시에는 평가 심사대 상 제외, 협약 체결 취소,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제출한 신청서 내용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협약 체결 기업을 제외한 서류는 일괄 폐기
- 대회 사후 성과·이력 관리 등을 위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성과 자료(매출, 고용인원 등) 을 요청할 수 있음

IV 선정 방법

□ 서류 심사

- 지원자의 자격·역량과 참여 제한 여부 등 평가,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 심사
- 신청 서류를 토대로 사업 목적 및 사업 계획 등 적합성 검토

□ 문의 사항

-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(031-299-1376)

[별첨1] 「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」 신청 제외 대상

1.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
- 수혜기업(자)이 신청접수 마감일 이후 신용정보 조회일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.
-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자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의결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 또는 채무 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(지원) 가능

2. 본 사업에 신청하는 건의 경우 기타 중앙·지자체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(기업)는 중복 신청(지원)할 수 없으며, 타 사업의 중복 지원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중복수혜 여부 확인 후 신청(지원) 할 것

*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

3. 본교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서 제재 통보를 받은 기업(자)

- 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업(자), 퇴거 통보 입주기업(자)

4.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
5.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No	대상 업종	코드번호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4	그 밖에 1~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—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www.kostat.go.kr) 참고

6. 기타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